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188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제출
2. 제 안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개정안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포상)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임.¹⁾

- 예를 들어, 기업이 자율주행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하고자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

1)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www.sandbox.go.kr/sandbox/info/sandbox_intro.jsp)

-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2024년 현재 총 8개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로 확대·운영 중임.

○ 금융 분야는 2018년 12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9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한 기간²⁾ 동안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규제특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음.

□ 한편, 규제샌드박스의 각 분야별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및 국무조정실·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반영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음.³⁾

○ 주요 개정사항은 ①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② 적극행정 면책 규정, ③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6개 법률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

2)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2년의 범위 내 지정, 2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법 §4①, §10①)
○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최대 1년 6개월(최초 6개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10의2⑦)

3) 법제처,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로 승인기간 대폭 단축된다」, 2023.5.2.

례법」 일부개정법률안만 처리되었으며,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5건이 제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음.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 규정 관련 규제샌드박스 법률 개정안 현황>

의안번호*	법률명	소관부처	개정 조문	주요 내용
2202188 (212321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위원회	§30의2	○(적극행정 면책) 실증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경우 적극행정 면책 조항이 既규정되어 있어 정비 제외(§30)
2202185 (2123212)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 자원부	§35의2 및 §35의3	
2202184 (212324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0의2 및 §40의3	
2202182 (21232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71의2 및 §71의3	
2202183 (21232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53의4 및 §53의5	
(212321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1대 국회처리 (대안반영폐기)	중소벤처 기업부	§141의2 및 §141의3	○(포상) 신기술 도입·신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주) 괄호 안은 제21대 의안번호임.

-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총 355건 중 2019년에 77건이 지정된 이후 연도별 지정건수가 감소 추세라는 점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서비스 출

시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단위: 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월말	계
77	58	50	52	56	62	355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은 「정부 표창 규정」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⁴⁾ 등 현 제도를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하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 정비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이 포

4)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제2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公勳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제4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 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누구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의 “목적”이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인지, 또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①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는 등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금융혁신에 기여한 자인지 또는 혁신금융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② 개정안의 “업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대상자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자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법제처의 5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의 입법효과로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 이에 따르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달리 법 문언이 모호하여 대상자의 요건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안 제30조의2 중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특정 분야 활성화 등을 장려하기 위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입법례를 보면, 「물환경보전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시행자, 위반행위 신고자, 공공기관 등으로 특정되어 있고, 다수의 법률에서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관련 입법례>

Ⅰ 포상금 규정 입법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112신고자 포상)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 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② 표창 규정 입법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표창을 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4조(표창)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4조(상훈 제도) 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함께 규정한 입법례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성과의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③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2조(포상 및 상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08